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나2036481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나20364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1835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정찬수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찬희

변론 종결 2024. 8. 28.

판결 선고 2024. 10. 25.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합51835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 3행의 "체결하고,"를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2행의 "대출받아"를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 대출'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14필지 토지에"를 "1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탁 외 토지'라 한다)에"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10행의 "하였다."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1행 내지 제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8) 김원기는 2020. 5. 6. M, W, J, O, N, P을 상대로 ① 원고가 D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대출금을 탕감하여 D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 ② 이 사건 합의를 통해 D에 4,078,267,990원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 ③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원고가 D에 가지는 4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소멸시킨 행위 등으로 인한 배임 혐의를 들어 고소하였으나, 이를 수사한 검사는 2023. 2. 16.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취지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이후 2023. 4.

13.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으나 검사는 2023. 5. 22. 다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취지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30.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위 불기소결정을 '관련 불기소결정'이라 한다)

9) 한편 원고는 D를 비롯하여 J, M 등을 상대로 ①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J과 원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였던 M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을 탕감하는 등 원고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한편(주위적 청구), ② 2013. 7. 15.자 원고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전제로 D가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결의에 따라 D에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반환되어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예비적 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탕감한 조치 및 이를 비롯한 이 사건 합의 및 약정 등의 체결을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 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5731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나2037347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다269037호. 이하 이 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 내지 17, 18, 20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 체결 여부

원고는, 피고들(특히 피고 C)이 자신이 이 사건 대출약정의 연대보증인임을 전제로 면책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이 연대보증인임을 전제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만약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면 F은행이 대출계약에서 전제되어 있는 인적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결론이 되나 이는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서(제26면)에 의하면 연대보증인들이 일정한 양식과 내용을 정한 연대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대출약정에서의 연대보증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특정한 서면에 의한 일정한 방식으로만 체결하도록 하는 별도의 특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적식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2) 다른 한편, 위 대출약정서는 F은행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과 같은 인적 담보 이외에 질권, 양도담보권, 신탁에 기한 수익권 등 별도의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제로 F은행의 연대보증서를 제외한 다른 충분한 담보권을 취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F은행이 위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별도로 피고들의 연대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득하지 못할 바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 소멸 여부

1)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탕감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J은 2013. 2.경부터 이미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잔금대출과 관련한 협상 및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원고 측은 2013. 7. 18. 이전에 이미 대출이 승인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와 D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만약 나머지 잔금 대출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면 K이 2013. 7. 13.경 임시주주총회에서 낙찰자 지위를 인계하는 결의를 하였을 리 없고, 원고도 물취될 가능성이 높은 기지급 잔금과 관련한 책임을 승계하지 않았을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와 관련된 공매절차 과정에서도 2013. 7. 22.경까지 유치권 신고가 된 바 없었고, 피고 C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 6. 4.경 유치권 포기각서를 징구해 두는 등 이 사건 대출금 탕감과 관련한 결의 당시 유치권 문제는 모두 해결된 상태였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사업에 관한 인허가권도 함께 양도받았던 점, 원고는 F은행의 대출금 및 이에 대한 담보권을 일체로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탕감하는 경우 이에 대한 담보권 역시 함께 소멸하게 되는 점,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적은

부실채권이었다면 D가 이를 탕감하여 달라고 요구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컨소시엄 대출에 있어 D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탕감하고 이 사건 약정 및 합의를 체결한 것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4, 25, 27,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사회결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탕감하여 준 조치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B증권의 AC 과장은 2013. 7. 18.경 M에게 이 사건 컨소시엄 대출과 관련된 '자금인출 및 송부계획'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위 AC는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7. 18. 이메일을 송부하였을 당시 원고는 대주단이 요구하였던 3대 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상태였다. 위 3대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잔금대출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대주나 주관사인 F은행 모두 현장실사를 통해 공매 낙찰 잔금 대출시 유치권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D는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곳이고, 신탁된 토지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된 토지 외에 AD 등 개인 토지들이 담보제공될 수 있게 하는데 역할을 하였다', 'K이 2013. 7. 8.경 계약금 30억 원을 추가 지불하였다고 해도, 대출 여부는 금융기관 심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심사승인되기 전까지는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잔금 대출을 받아 신탁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신탁 외 토지나 인허가권은 공매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별도로 확보해야 했고, 위 개인 토지들을 포함하여 100% 토지확보가 되어야 대출이 되기 때문에 D의 협조가 당연히 있어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 C은 수사기관에서 'J'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건축현장의 유치권을 해결해 줄 것과 AE가 보유한 인허가권을 원고에게 넘기는 데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유치권도 유치권이지만 직원들 급여 처리하고 밀린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유치권 포함해서 7~8억 상당은 필요할 것이라는 정도로 이야기 하였고, 일단 AF회사, AG회사 관계자를

만나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유치권 현수막을 내리도록 조치하였다', '원고가 D에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하는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 인허권 변경 동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었으나 실제 40억 원이 D의 채권자들에게 전부 집행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설계용역 업체에는 일부 금원만을 합의 지급했다'는 등으로 진술한 바 있고, 당시 수사과정에서 'D가 원고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이체받아 사업부지 관련 제세공과금의 납부, 유치권자 AH회사, AG회사 및 기타 채권자들에 대한 일부 채무 변제, 직원 급여 등 경비를 지출하였고 그 결과 2013. 7.경 원고의 125억 원 대출 이전 골프장 현장 실사에서 유치권 등 권리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을 제1호증 참조). 이러한 진술내용과 수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AC가 M에게 보낸 2013. 7. 18.자 이메일은 이 사건 컨소시엄 대출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집행계획 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이러한 사정을 들어 2013. 7. 18.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컨소시엄 대출의 실행이 확정되어 있었던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은 대출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진입로를 확보할 것,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확보할 것,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제한이 없을 것(유치권 해소 등)'을 이른바 3대 조건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탁 외 토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로 통하는 진입로 및 골프장의 일부 코스 부지로 활용되는 토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연유로 F은행 등 대주단은 그 대출의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위 사업부지 뿐만 아니라 '진입로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탁 외 토지에 관하여도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신탁 외 토지는 총 18개 필지 토지인데, 그 중 11개 필지 토지는 피고 C의 친척인 Y의 소유인 토지(이에 관하여는 F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 또는 Y의 신탁에 의한 H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였고, 나머지 7개 필지 토지 중 AI 소유의 3개 필지 토지 및 AJ 소유의 2개 필지 토지는 D가 농업회사법인이 아니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사실상 처분권을 확보해둔 상태였으며, AD, AK 소유의 각 토지는 그 소유자들의 뜻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그들의 명의로 그대로 남겨둔 채 매매대금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AE가 처분권을 확보해 둔 상태였다. 이후 원고와 D 사이에서 이 사건 약정 및 합의가 체결된 2013. 7. 22.경 D는

원고에게 위 A1 및 A2 소유 총 5개 필지 토지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로해 주었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Y 등 소유 11필지 토지 및 AD, AK 소유의 토지에 대한 권한 일체를 양도해 주었다. 여기에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약정 및 합의가 순차로 체결된 이후인 2013. 7. 22.경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에 관련된 여러 권리의무 양도양수 확인서가 작성되고, 이러한 각종 서류들이 금융기관에 제출된 후 이 사건 컨소시엄 대출이 실행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원고로서는 진입로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사용권 이전 등 금융기관이 대출조건으로 요구한 사항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D 측의 협조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가 D의 협조를 얻어 이 사건 신탁 외 부지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확보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대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D에 대한 대출금을 탕감하기로 하는 원고 이사회 등 결의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그 대상 내지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는 D와 사이에 작성한 권리의무 양수도 확인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권리의무 양수도 확인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권리의무 양수도 확인서, 농지보전부담금 채권 양수도 확인서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장에 제출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K, H와 사이에서 2013. 7. 17.자로 승계계약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일체의 권리를 곧바로 승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2013. 7. 22.경 D와 위 서류를 작성하고 2013. 7. 26. D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D가 이 사건 사업부지와 관련한 유치권 포기각서를 징수받은 시점이 2013. 7. 15.자 이사회 결의 시점보다 앞선다거나 2013. 7. 29.자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D의 모든 부동산 및 권리를 '신탁 공매'를 통하여 2013. 7. 22.부로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는 점, 이 사건 대출금을 탕감하여 주는 경우 이와 관련한 담보권이 함께 소멸한다는 점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탕감하지 않고서도 D의 모든 권리를 양수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³⁾ (2) 따라서 원고의

대표이사 M 등이 2013. 7. 15.자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탕감한 조치는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러한 조치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탕감한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는, 2013. 7. 15.자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은 J와 M가 위조한 것이고, 원고의 다른 이사들은 M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 내용과 같은 안건에 관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하지 않으므로 위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는 절차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탕감한 2013. 7. 15.자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2013. 7. 15.자 이사회 의사록(갑 제4호증)에 의하면, 위 이사회에는 '대표이사 M, W 및 이사 O, AL'이 참석하여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탕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결정(갑 제21호증)에 의하면, 그 수사과정에서 위 W는 '이사회 결의 당시 M가 골프장 사업에 필요하다고 설명하기에 채무 탕감 등 안건에 찬성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위 O, N은 'M로부터 회사 자금 조달하기 위해 어떤 안건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을 뿐 이사회 결의의 구체적 내용은 아는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위 진술 내용에 따르면 대표이사 W는 위 이사회 결의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탕감 안건에 대해 찬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사 O, N은 이사회에 참석하지는 않은 채 전화로 대표이사 M에게 포괄적인 동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391조 제2항은 '이사회'의 경우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4) 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정관에서 원격통신수단 등 전화회의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볼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이사회에 관한 이사 O, N의 위 진술 내용 중 '전화로'라는 의미가 전화회의를 뜻하는 것인지 혹은 어떠한 방식의 통화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이 실시간으로 통화하면서 해당 결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전화회의 방식으로 해당 결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 전원의 의사와 찬성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탕감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2013. 7. 15.자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록만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위 이사회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정도로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을 제1호증(=갑 제21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2013. 7. 15.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관련하여, 원고의 당시 주주 O(지분비율 48%) 및 주주 N(지분비율 40%)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W에게 주주로서의 권한을 위임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주주 P(지분비율 12%)은 수사기관에서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바 없고,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위 주주총회 결의 참석 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을 제2호증5)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절차적 요건을 현격히 결여하였다거나 J, M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위조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의 2013. 7. 15.자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인수 및 인허가승계, 부담금 등의 승계에 대한 D의 승계사항이 완료되었을 때 F은행으로부터 인수한 D에 대한 채권을 탕감한다'는 내용이 결의되었고, 원고는 2016. 12. 16. 주식회사 AM에게 원고의 부동산 및 사업권을 대금 378억 원에 매각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사업권 승계의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원고의 부동산 및 사업권을 매각하였음에도 오직 이 사건 대출금 탕감 부분만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여러 법률효과 중 일부만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이러한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탕감하는 안건에 대한 원고의 2013. 7. 15.자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장석조

판사배광국

1)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서 및 2024. 8. 26.자 준비서면에서 관련 사건의 준비서면을 첨부하고 이에 기재된 주장들을 이 사건에서도 원용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은 쟁점이 유사한 면이 있지만 소송당사자(피고)를 달리하는 다른 별개의 청구이고, 준비서면에서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기는 하나, 관련 사건의 준비서면에 담긴 주장 중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중복되거나 취지를 같이하는 부분을 최대한 선택하여 판단한다.

2) 주식회사 X는 위 대출약정서 제26면 기재와 같이 그 소유 골프장의 시설물에 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F은행을 수익권자로 지정하여야 할 추가적인 의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결국 위 대출약정서 하단의 주식회사 X의 서명은 위와 같은 담보물 제공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른 지위에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대출약정의 정의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들 모두가 연대보증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였다고 추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탕감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감안하면 원고가 D의 협조 없이도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2011년 상법 개정 전에는 '동영상 및 음성'으로 되어 있었으나, 위 상법 개정으로 '동영상' 부분이 삭제되었다.

5)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7347 사건에 제출된 '을 제35호증(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의 2023. 5.

23.자 불기소결정서)'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